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87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임광현·강준현·김성회

복기왕 • 이정문 • 박상혁

박홍배 • 조정식 • 한정애

이인영 · 김병기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와 신혼부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을 증액하며 납입액 한도를 5년간 총 2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 주자
- 2.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 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천만원
 - 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9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만원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 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 좌 보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계좌보유자의이 법 시행 이후 연간 납입한도는 제91조의18제3항제5호 계산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천만원 × (1 + A) + 2천만원 × B - 누적 납입금액

A: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

B: 가입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 과 같음) 략)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1천만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 득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거주자 2.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 <신 설> 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7년 이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 상인 경우: 1천만원 나. 6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9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의 경우: 200만원
-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 1. ~ 4. (생략)
-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누적 납입금액

④ ~ ⑫ (생 략)

아니하는 경우: 8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
<u>500만원</u>
③
1. ~ 4. (현행과 같음)
5 <u>2억원</u>
4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④ ~ ① (현행과 같음)